

부 산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 건 2008가단19191 손해배상(기)
원 고 P손해보험 주식회사
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창환
피 고 D (65년생, 여)
변 론 종 결 2008. 10. 6.
판 결 선 고 2008. 11. 10.

주 문

1. 별지 목록 1.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2. 기재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보험금지급채무는 금 6,000,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별지 목록 1.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2. 기재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07. 1.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2. 기재 동산종합보험계약(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.)을 체결하였는데, 원고는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를 약관에 따라서 보상하기로 하였다.

나. 2007. 11. 23. 09:30경 피고의 사업장인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XX 2층 사무실 내에 있는 보관함 위에 있던 카메라 1점(시가 6,000,000원 상당)이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절취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(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.)가 발생하였다.

다. 이 사건 보험약관 제6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①항 제11호에 '망실 또는 분실에 의한 손해'라고 기재되어 있고, 위 보통약관의 용어의 정의로 '도난'과 '망실, 분실'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되어 있다.

1 도난 - 도난이라 함은 완력이나 기타 물리력을 사용하여 보험의 목적을 훔치거나 강탈하거나 무단으로 장소를 이동시켜 피보험자가 소유, 관리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. 다만, 외부로부터 침입시에 침입한 흔적 또는 도구, 폭발물, 완력 기타의 물리력을 사용한 흔적이 뚜렷하여야 합니다.

2. 망실, 분실 - 망실이라 함은 보관하는 자, 또는 관리하는 자가 보험의 목적을 보관 또는 관리하던 장소 및 시간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지 못하여 보험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며, 분실이라 함은 보관하는 자 또는 관리하는 자가 보관, 관리에 일상적인 주의를 태만히 하여 보험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.

[인정근거] 생략

2. 주장 및 판단

가. 당사자 주장

원고는, 이 사건 사고는 외부로부터 침입한 흔적이 뚜렷이 드러나야 함에도 그러한 흔적이 없고, 피고에게 이 사건 카메라를 보관하는 보관함이 별도로 있음에도 보관함에 보관하지 않고 방치한 사고여서 이는 관리소홀로 인한 약관의 분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이므로, 이 사건 사고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없다고 주장하고, 피고는 이 사건 보험의 목적인 카메라가 도난당한 것으로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고, 계약 당시 보험목적물의 보관방법이나 도난과 분실의 차이를 설명하지 않았으므로,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다룬다.

나. 판단

살피건대,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, 이 사건 사고는 성명불상의 자가 보험기간 내에 피고의 사무실에 있던 이 사건 카메라를 절취한 것으로, 이 사건 보험약관에 정한 성명불상의 자가 무단으로 장소를 이동시켜 피보험자인 피고가 이 사건 보험목적물인 카메라를 소유, 관리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경우에 해당되고, 이는 약관에 규정된 도난의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며,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외부로부터 침입한 경우로 침입한 흔적이 뚜렷하지 않다고 하여 이를 분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, 이 사건 보험약관상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일상적인 주의 태만에 기하여 일어난 사고로 보험약관에 정한 분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[또한,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·설명 의무를 지고 있는데, 앞에서 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보험약관의 명시·설명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

없으므로, 이 사건 보통보험약관에 규정된 도난과 망실 또는 분실의 의미를 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하여 이 사건 사고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를 면할 수도 없다.].

따라서,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에 비추어 이 사건 보험목적물의 손해액으로 추정되는 카메라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 6,000,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지급채무가 금 6,000,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,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백진규 _____

별지

목록

1. 보험사고

2007. 11. 22. 14:00경부터 2007. 11. 24. 12:00경 사이에 피고의 사업장(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XX)에서 발생한 카메라 도난사고.

2. 보험계약

- 보험종목 : 동산종합보험
- 증권번호 :
- 청약일자 : 2007. 1. 8.
- 보험계약자 : 피고
- 피보험자 : 피고
- 사업자번호 :
- 보험기간 : 2007. 1. 8. ~ 2008. 1. 8.
- 가입금액 : 600만 원(도난된 카메라)
- 담보지역 : 대한민국. 끝.